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통보

개정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1. 통보국가: 미국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환경보호청(EPA)

3. 근거 조항 제 2.9.2 조 [], 제 2.10.1 조 [], 제 5.6.2 조 [X], 제 5.7.1 조 [], 제 3.2 조 [], 제 7.2 조 [], 기타:

4. 해당 제품(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석탄 및 석유 화력 전기 유ти리티 증기발생장치;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함); 과열수보일러; 그 부분품 (HS 코드: 8402); 품질 (ICS 코드: 03.120); 공기질 (ICS 코드: 13.040); 버너. 보일러 (ICS 코드: 27.060)

5.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제목, 페이지 수, 접근 방법):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석탄 및 석유 전기 유ти리티 증기발생장치 (12 페이지, 영어)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또는 연락처 링크:

USA WTO TBT 질의처, 이메일: usatbt@nist.gov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USA/25_04170_00_e.pdf

6. 내용: 규칙안 – 이 조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적으로 수은 및 대기독성물질 기준(MATS)으로 알려진 석탄 및 석유 화력 전기 유ти리티 증기발생장치(EGU)에 대한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NESHAP)의 특정 개정사항(2024년 5월 7일 공표되었고, G/TBT/N/USA/1837/Rev.1/Add.1로 통보됨)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PA가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개정사항에는 기존 석탄 화력 EGU의 비수은 금속 유해대기오염물질(HAP)에 대한 대체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정된 여과성 입자상물질(fPM)에 대한 배출 기준, 개정된 fPM 배출 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요구사항 및 갈탄 화력 EGU에 대한 개정된 수은(Hg) 배출 기준이 포함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품질 요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8. 관련 문서:**

90 연방관보(FR) 25535, 2025년 6월 17일; 연방규정집(CFR) 제 40 편 제 63 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6-17/html/2025-10992.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6-17/pdf/2025-10992.pdf>

EPA는 2025년 7월 10일 동부표준시(ET) 기준 오전 11 시에 시작되어 ET 기준 오후 7시에 종료되는 원격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PA는 추가 발언자가 없는 경우 마지막 사전 등록 발언자가 의견을 개진한 후 15분 뒤 세션을 종료할 수 있다.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pa.gov/stationary-sources-air-pollution/mercury-and-air-toxics-standar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규칙안 및 G/TBT/N/USA/1837로 통보된 기준 조치들은 Docket 번호 EPA-HQ-OAR-2018-0794로 식별된다. Regulations.gov의 Docket 풀더는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18-0794/document>에서 제공되며, 여기에서 관련 기본 문서, 보충 문서 및 수렴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문서들은 Regulations.gov에서 Docket 번호를 검색해 액세스할 수 있다.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는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2025년 8월 11일 오후 4 시까지 USA TBT 질의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USA TBT 질의처에 접수된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규제기관과 공유되며, 의견수렴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 Regulations.gov의 Docket에도 제출된다.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추후 결정

10.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 2025-08-11

통보일로부터 60 일 []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의견 제출: USA WTO TBT 질의처, 이메일: usatbtep@nist.gov